

2008. 4.

수 신 : 제천시의회회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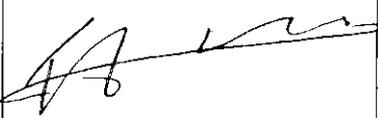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.

발의자 : 성명중 의원 (서명하는 발인)

의 2인

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발 의 서 명 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성명중		
김명섭		
양순경		

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247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4. .

발 의 자 : 성명중 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제천시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,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(시행규칙)에 제천시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시행하고 있는 현 규칙과 일치시키고자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(안 제6조)

○ 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제천시 규칙으로 정한다.

- “제천시 규칙” 을 “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” 으로 정한다.

- 붙임 1.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 끝.

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제천시 규칙”을 “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<u>제천시 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	<p>제6조(시행규칙) <u>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</u></p>